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2813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0고단28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청규(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 13. 00: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자기야, 나야. 하고 싶다. 신음 소리 내 봐. '오빠, 사랑해' 라고 해봐. 나 지금 거기 만지고 있어. 정액이 나올 것 같아. 너도 손넣고 만져봐. 신음 소리 내 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 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2018. 10. 11. 용인동부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중순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같은 달 하순경 기존에 사용하던 C 휴대전화가 일시 정지되어 같은 해 3. 초순경 F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2020. 4. 20.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법무부 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번호에 대한 가입자 회신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다른 연락처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험의자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화면 캡처 첨부)
- 1.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1.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받은 불쾌감과 수치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현재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최혜승